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주)코람코자산신탁
(영문명) Koramco REITs Management and Trust Co., Ltd.
(홈페이지) <http://www.koramco.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4F
(전 화) 02-787-0000

대 표 이 사 : 윤용로, 정용선

담 당 임 원 : (직 책) 전 무
(성 명) 강 승 일 (전 화) 02-787-0105

작 성 자 : (직 책) 대 리
(성 명) 김 준 호 (전 화) 02-787-0050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9호)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2019. 3. 22 오전 10시	
2. 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1층 대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1. 재무제표 승인 2. 정관 개정 3. 이사 선임(상근이사 2명, 비상근/사외이사 2명) 4. 감사위원 선임(2명) 5. 이사보수한도 승인	
4.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19. 3. 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4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없음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정준호	'63.7.12.	3년	신규선임	(주)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사장 삼성카드(주) 부사장	삼성카드(주) 부 사장	서울대 경제학과	대한 민국
차순영	'60.11.1.	3년	신규선임	LF 경영혁신본부장 LF 경영지원부문장	LF 경영지원부 문장	부산대 경영학과	대한 민국
김홍수	'59.7.9.	2년	재선임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6대 원장	공공투자연구소 선임컨설턴트	서울대 경제학과	대한 민국
오종한	'65.1.15.	2년	재선임	법무법인 세종(現)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법무법인 세종	서울대 사법학과	대한 민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김홍수	'59.7.9.	2년	재선임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6대 원장	공공투자연구소 선임컨설턴트	서울대 경제학과	대한 민국
오종한	'65.1.15.	2년	재선임	법무법인 세종(現)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법무법인 세종	서울대 사법학과	대한 민국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 분	내 용		이 유
1. 사업목적 추가	-		
2. 사업목적 삭제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부동산관련 권리 업무 추가 - 신재생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사업 추가
	제2조(목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다. (생략) 라. 부동산의 신탁과 관련된 다음의 업무 (1)~(3) (생략) (4)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신 설> <신 설> 마. (생략) 2.~8. (생략) ② (생략)	제2조(목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권리의 신탁과 관련된 다음의 업무 (1)~(3) (현행과 같음)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 (6)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마. (현행과 같음) 2.~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정관 변경을 통한 목적사업의 변경

【집중투표제 도입.배제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집중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배제		